
Policy and Law Report _Vol.13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5.16.~ 2022.05.22) -

May 23,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 기 위한 민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 가 중심이 되어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를 출범함 《얼라이언스 구성(안)》 <pre> graph TD A[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 B[로봇산업협회(간사)] A --- C[실내주행 분과] A --- D[실외주행 분과] A --- E[기술협력 분과] A --- F[사업협력 분과] C --- G["수요처 발굴, 마케팅, 영업 활동 지원"] D --- H["규제애로 발굴, 법률적 쟁점검토, 상용화 기반 도출"] E --- I["기술정보 공유 기술이전 지원 R&BD 사업기획"] F --- J["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동 마케팅, 조사 및 통계, 투자유치 지원 등"] </pre>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기업·기관간 정보 공유 ▶ 2단계 • 규제 개선 고도화 •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 공동 비즈니스 창출 • 공동 협력사업 발굴·지원 ▶ 3단계 •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 공동 마케팅 진행 • 조사, 통계 진행 • 투자유치 지원	2022- 05-1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농림축산 식품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6.1. 시행 예정)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39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 이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활동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폐기물수거업자의 등록기준인 소유 선박의 수거 작업 투입 원칙의 예외로써 선박임차가 허용되는 경우에 '소유 선박으로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이동하는 등 수거 작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선박 임차 허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19조의2 신설, 별표4 제2호 비고 제8호 신설)	2022-05-18
해양 수산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8.18. 시행 예정)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신고, 변경신고 및 해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00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36호, 2022. 5. 9.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해산신고서와 신고확인증 등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및 해산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조·제9조·제10조 신설, 제11조·제12조·제13조 개정, 제14조 삭제, 제18조 개정)	2022-05-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 (2022.7.5. 시행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 이에 따라,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의2 신설, 제3조 개정)	2022-05-1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합리화 1) 공무원 경력 과목 면제자에 대한 합격인원 결정 방식 개선 (안 제2조) -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2) 공무원 경력 과목 면제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안 제8조 및 별표 4 신설) -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1)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안 제14조의3 신설)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2)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 (안 제14조의4 신설)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3)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안 제14조의5 신설)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목적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 등으로 정함 ③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및 세무사 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안 제14조의12 및 제22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법인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명한 경우 해당 내용을 소속협회 및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소속 협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022-05-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안 제16조 및 제21조)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함 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안 제33조의6 신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5/20(금)~6/2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로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캄보디아왕국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1.10.26.)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캄보디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 내용으로는 ① '캄보디아'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제19호 신설)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국가에 캄보디아 포함 (영 제24조제16항 제12호 신설)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경감 조치 의무화 ※ 의견 제시기간 : 5/18(수)~6/27(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로 제출	2022-05-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① 도급에 따른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 별표35 토목 신설)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5/20(금)~6/2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2022-05-2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제2호가목3) 신설)	2022-05-1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각종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2022-05-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 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및 제32조의6제2항 신설 등)	2022-05-17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삼차원프린터 사용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은 부족한 상황임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2-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 및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6호 신설) ②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④ 삼차원프린팅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안전 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안 제66조제3항제3호)	2022-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지방에 있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에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총 135개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62개 기업이, 충북·전북·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 73개 기업이 지정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이 각각 46%와 54%임 또한, 2021년도에 창업한 뿌리기업을 포함한 기술기반업종의 중소기업 수는 총 21,293개로, 이 중 수도권에서 13,441개의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7,852개의 기업이 창업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비율이 각각 63%와 37%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8개의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 11개가 수도권에, 27개가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그 비율은 29%와 71%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이나 기술기반업종 중소기업의 창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더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화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뿌리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 등)	2022-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환경노동위원회	•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환경부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부터 재활용되기 전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해석함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이에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5조 및 제35조의3 등)	2022-05-13
	• 「<u>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u>」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삭제 및 제17조의2 신설)	2022-05-1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을 소비자로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지분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안 제58조의3, 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 신설)	2022-05-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2022-05-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월할(月割) 계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日割)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 또는 월할(月割) 계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 또는 월할(月割)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2022-05-19
	•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日割)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2022-05-19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5/2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9호 발간	
국회도서관	5/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4호 발간 -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	
	5/25(수)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7호 발간 - 교육의 디지털전환, 아직도 선택의 문제인가?	
	5/26(목)	「현안, 외국에선?」 제36호 발간 -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련 미국과 호주의 최근 동향	
입법조사처	5/25(수) 07:30	제16회 시선과 논단 세미나	온라인
	5/23(월) 14:0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남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5/24(화) 14:0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 양천수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5/28(수) 14:00	초고령사회 대비 우리나라의 고독사 실태와 과제 - 고숙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7(금) 10:00	제2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 고혜진 부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5/27(금) 13:00	최근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향후과제 - 이창온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별첨1] 제397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5/25(수) 10:00	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정보위	5/25(수) 10:00	전체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회
	5/26(목) 10:00	전체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2년도 예산안 의결 부대의견 보고
예결위	5/23(월) 10:00	소위	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특별위	5/24(화) 15:00	전체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 자문위원회 최종보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5(수) 07:00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정진석 의원실, 폴리뉴스 외	CCMM빌딩 12층
5/25(수) 13:30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	주철현 의원실, 해양수산부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5(수) 14:00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신사업 활로는?	윤창현 의원실, 생명보험협회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5(수) 14:30	윤석열 새정부에 바라는 우선 국정과제 국회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6(목) 14:00	제2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김상훈 의원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5/2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8호 발간	
국회도서관	5/16(월)	「팩트북」 2022-2호(통권 제94호) 발간 - 디지털화페	
	5/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3호 발간 -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예산정책처	5/17(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등	
	5/18(수)	2022 공공기관 분석보고서 발간 -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7(화) 14: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핀테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18(수) 10:00	신정부 경제정책 포럼	서병수 의원실, 공감신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9(목) 14:00	(최인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송석준 의원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0(금) 15:00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 무역 1조달러 시대, 간접수출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다	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소속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